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10. 30 선고 2020가단191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. 1. 11.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4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김지현

별지